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1월 15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 증원과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76’을 ‘1,486’으로 개정(증 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49’를 ‘1,454’로 개정(증 5명)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을 “32”로 개정(증 5명)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별표 2)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3% 이내	31% 이내	7.5% 이상	0.5% 이내

⇒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4% 이내	31% 이내	6.5% 이상	0.5% 이내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별표 3)

- 총 계 : ‘1,476’을 ‘1,486’으로 개정(증 10명)
- 일반직 계 : ‘1,471’을 ‘1,481’로 개정(증 10명)
- 일반직 6급 이하: ‘1,393’을 ‘1,403’으로 개정(증 10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현재1,476명에서 1,48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358억 원 내에서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 안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을 33%에서 34%로 늘리고 9급

을 7.5%에서 6.5%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7급이하 하위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으로 구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도입을 위하여 구의회 정원 5명(정책지원관 4명, 인사 전담인력 1명), 임대차신고제 전담 인력 2명, 재개발 및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인력 2명, 공원관리 등 생태 분야 전문 인력 1명을 보강하는 것임.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총액 내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도입,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규 총원하는 것으로써, 2022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358억 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322억 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10명의 인건비는 연간 5억 9,879만 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08 호
----------	---------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 증원과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76'을 '1,486'으로 개정(증 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1,449'를 '1,454'로 개정(증 5명)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을 '32'로 개정(증 5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별표 2)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3% 이내	31% 이내	7.5% 이상	0.5% 이내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4% 이내	31% 이내	6.5% 이상	0.5% 이내

다.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 계 : '1,476'을 '1,486'으로 개정(증 10명)
- 일반직 계 : '1,471'을 '1,481'로 개정(증 10명)
- 일반직 6급 이하: '1,393'을 '1,403'으로 개정(증 1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76명”을 “1,48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49명”을 “1,45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7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이내	6%이내	21%이내	34%이내	31%이내	6.5%이상	0.5%이내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37.5% 이내	25% 이내	12.5% 이상	

비 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총 계		1,486	1,486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81	1,481			
일반직	3급	1	1	-	-	-
	4급	9	7	1	1	-
	5급	66	33	2	13	18
	6급 이하	1,403	1,403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476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49명</u></p> <p>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7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486명</u>-----</p> <p>1. ----- <u>1,454명</u></p> <p>2. ----- <u>32명</u></p>																																																																																																																																
<p>[별표 2]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u></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 율</td> <td>1% 이내</td> <td>6% 이내</td> <td>21% 이내</td> <td>33% 이내</td> <td>31% 이내</td> <td>7.5% 이상</td> <td>0.5% 이내</td> </tr> </tbody> </table> <p>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2.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5급상당 이상</th> <th>6급 상당</th> <th>7급 상당</th> <th>8급 상당</th> <th>9급 상당</th> </tr> </thead> <tbody> <tr> <td>비 율</td> <td>25% 이내</td> <td>37.5% 이내</td> <td>25% 이내</td> <td colspan="2">12.5%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3% 이내	31% 이내	7.5% 이상	0.5% 이내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37.5% 이내	25% 이내	12.5% 이상		<p>[별표 2]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u></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 율</td> <td>1% 이내</td> <td>6% 이내</td> <td>21% 이내</td> <td>34% 이내</td> <td>31% 이내</td> <td>6.5% 이상</td> <td>0.5% 이내</td> </tr> </tbody> </table> <p>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2.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5급상당 이상</th> <th>6급 상당</th> <th>7급 상당</th> <th>8급 상당</th> <th>9급 상당</th> </tr> </thead> <tbody> <tr> <td>비 율</td> <td>25% 이내</td> <td>37.5% 이내</td> <td>25% 이내</td> <td colspan="2">12.5%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4% 이내	31% 이내	6.5% 이상	0.5% 이내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37.5% 이내	25% 이내	12.5% 이상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3% 이내	31% 이내	7.5% 이상	0.5% 이내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37.5% 이내	25% 이내	12.5% 이상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4% 이내	31% 이내	6.5% 이상	0.5% 이내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37.5% 이내	25% 이내	12.5% 이상																																																																																																																													
<p>[별표 3]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구의회 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476</td> <td colspan="4">1,476</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471</td> <td colspan="4">1,471</td> </tr> <tr> <td rowspan="5">일 반 직</td>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9</td> <td>7</td> <td>1</td> <td>1</td> </tr> <tr> <td>5급</td> <td>66</td> <td>33</td> <td>2</td> <td>13</td> </tr> <tr> <td>6급 이하 소계</td> <td>1,393</td> <td colspan="4">1,393</td> </tr> <tr> <td>전문 경력관 소계</td> <td>2</td> <td colspan="4">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4</td> <td colspan="4">4</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4</td> <td colspan="4">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76	1,476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71	1,471				일 반 직	3급	1	1			4급	9	7	1	1	5급	66	33	2	13	6급 이하 소계	1,393	1,393				전문 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p>[별표 3]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구의회 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486</td> <td colspan="4">1,486</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481</td> <td colspan="4">1,481</td> </tr> <tr> <td rowspan="5">일 반 직</td>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9</td> <td>7</td> <td>1</td> <td>1</td> </tr> <tr> <td>5급</td> <td>66</td> <td>33</td> <td>2</td> <td>13</td> </tr> <tr> <td>6급 이하 소계</td> <td>1,403</td> <td colspan="4">1,403</td> </tr> <tr> <td>전문 경력관 소계</td> <td>2</td> <td colspan="4">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4</td> <td colspan="4">4</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4</td> <td colspan="4">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86	1,486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81	1,481				일 반 직	3급	1	1			4급	9	7	1	1	5급	66	33	2	13	6급 이하 소계	1,403	1,403				전문 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76	1,476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71	1,471																																																																																																																															
일 반 직	3급	1	1																																																																																																																														
	4급	9	7	1	1																																																																																																																												
	5급	66	33	2	13																																																																																																																												
	6급 이하 소계	1,393	1,393																																																																																																																														
	전문 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86	1,486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81	1,481																																																																																																																															
일 반 직	3급	1	1																																																																																																																														
	4급	9	7	1	1																																																																																																																												
	5급	66	33	2	13																																																																																																																												
	6급 이하 소계	1,403	1,403																																																																																																																														
	전문 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